

美國의 財務會計原則(基準) 制定 方向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宋 梓

<차 례>

- I. 序 論
- II. 美國의 財務會計基準 制定
- III. 美國의 一般的으로 公認된 會計原則
- IV. 示唆點

I. 序 論

財務會計는 주로 社外에 있는 現在와 未來의 投資者들을 爲하여 企業의 財政狀態와 이의 變遷 및 經濟成果를 報告하는 會計學의 한 分野이다. 그러므로 財務會計는 客觀的이고 信憑性이 있으며 適切한 報告書를 提出할 수 있도록 體系化되어 있어야 한다. 財務會計의 原則(基準)은 이러한 體系化를 爲하여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이고 또 財務會計의 產物인 財務諸表의 分析 및 解析을 爲하여도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 原則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對하여는 아직 統一된 意見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原則이 細密한 會計節次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많은 會計學者나 會計實務者들은 이는 어떤 基本 假定에서 誘導된 廣範圍한 指針들이어야 한다고 한다.

歷史적으로 보면 財務會計는 實務者들에 依하여 오래 前부터 發展되어 왔으나 理論적으로 研究되기 始作한 것은 近代에 와서 되었다. 理想的으로 생각할 때 理論적으로 誘導된 原則과 實務에서 發展된 原則은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想이 現實化되어 있지 못하다. 이를 現實化하는 過程으로서 理論과 實務는 相互補完되어야 하고 相互牽制되어야 좋은 財務會計 原則을 發展시킬 수 있다. 實務는 論理的으로 그럴듯 하여야 하고 理論에 依하여 發展된 原則은 實務에 根據를 두고 있어야 한다. 事實上 實務를 잘 觀察함으로써 좋은 原則을 發見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財務部에서 設置한 財政金融委員會의 企業會計準則制定分科委員會를 거쳐 1958年 7月부터 制定施行되어 왔다. 急變하는 經濟狀態에도 아무런 改正없이 施行되어 오다가 지금 改正案이 나와 論意되고 있는 形便이다.

筆者는 우선 美國의 財務會計基準制定에 關한 動向과 方向에 對하여 說明을 하고 이것들이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制定에 주는 몇 가지 示唆點을 提言함으로써 끝을 맺으려고 한다.

II. 美國의 財務會計基準 制定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一般的으로 公認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란 말은 美國에서도 政府나 協會, 學會 等 아무런 組織에서 公式적으로 定義된 일이 없다. 그렇다고 一般的으로 公認된 會計原則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實務를 通하여 歷史적으로 發展되어 왔다는 것 뿐이다.

證券去來委員會, 美國公認會計士會, 美國會計學會 等이 이들 原則의 發展을 爲하여 많은 影響을 미친 組織들이다.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933年과 1934年の 證券去來法에 依하여 美國 議會는 證券投資者들이 意思 決定을 하는데 適切한 資料를 가질 수 있도록 助하는 機關으로 이 委員會를 設置하였다. 議會는 이 委員會에 證券을 上場 去來하는 會社들의 會計原則을 制定할 수 있는 權限을 賦與하였다. 美國의 大規模會社들을 거의 다 포함하는 7,000개 以上の 會社들이 이 證券去來委員會의 所管下에서 委員會의 規定을 따라야만 된다는 이들 會社의 財務會計節次를 規定할 수 있는 權限이 있지만도 지금까지 會計原則의 發展보다는 全般的이고 公正한 資料의 報告에 더 重點을 두어왔다.

SEC의 規定 S-X는 財務諸表의 樣式과 內容을 어떻게 記入하느냐에 關하여 規定되어 있다. 또 SEC는 Accounting Series Releases를 通하여 會計原則의 適用에 關하여 發表한다. 그러나 會計原則의 廣範圍한 分野에 있어서 SEC는 一般的으로 公認된 會計原則의 適用을 主張하여 왔다. 特히 1938年 ASR No.4에서 SEC는 “權威者의 支持”가 없는 會計原則에 依하여 作成된 財務諸表는 脚註가 있더라도 不正確하고 投資者들을 잘못 認識시킬 憂慮가 있다고 하였다. SEC는 會計業務에 專門적으로 從事하는 會計士들을 權威者로서 看做하였다. 그러므로 美國公認會計士會가 財務會計基準發展에 있어서 가장 큰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

美國公認會計士會(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가 草創期에 貢獻한 것으로는 1917년에 作成한 貸借對照表 作成에 있어서 公認된 方法(Approved Methods for the Preparation of Balance Sheet Statements)과 이를 改正하여 1929년에 發表한 財務諸表의 檢證(Ver-

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 및 1934年 發表한 企業會計監査(Audits of Corporate Account)이다. 이들은 모두 財務諸表의 性格과 重要性 및 作成에 基本이 되는 會計原則에 關하여 論하였다. 特히 다섯가지의 原則을 提案하여 AIA(AICPA의 前身)에서 公式的으로 採擇되었는데, 이들은 ① 實現主義原則 ② 剩餘金區分의 原則, ③ 取得以前의 從屬會社 利益剩餘金を 聯結財務諸表上에 利益剩餘金으로 表示하지 않는다. ④ 金庫株의 資産化를 경우에 따라서는 認定할 수 있으나 配當金은 絶對로 利益으로 計上할 수 없다. ⑤ 關係會社에 對한 債權·債務 및 株主·任員 또는 役員에 對한 債權·債務는 반드시 區分 表示한다.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1938年에서 1959年까지에 걸쳐서 會計原則의 發展에 繼續的으로 힘써온 機關은 AICPA의 會計節次委員會(Committee of Accounting Procedure)이다. 1938年에 構成된 이 委員會는 첫 報告書에서 全會計學分野를 總括하는 會計原則을 制定하는 것은 非現實的이고 또 要請되는 것도 아니라고 結論지었다. 委員會에서 決議되는 事項은 $\frac{2}{3}$ 以上の 찬성을 얻어야만 하였다. 發表된 事項은 強靱성을 띤 것이 아니고 一般的으로 公認되어 適用될 수 있는 것에 重點을 두었다. 1939年에서 1959年에 걸쳐서 51個의 ARB를 發行하였다. 主要한 事項으로 ① 企業合併, ② 連結財務諸表, ③ 偶發債務, ④ 減價消却, ⑤ 國外投資活動, ⑥ 無形資産, ⑦ 所得稅, ⑧ 實查資産의 評價, ⑨ 貸借契約, ⑩ 損益計算書 및 利益剩餘金計算書의 作成報告, ⑪ 株式配當, ⑫ 株式오프션, ⑬ 運營資本 等이다. ARB는 一般的으로 會計原則을 適用하는 權威있는 報告書로 看做되었고 SEC도 小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RB를 一般的으로 公認된 會計原則으로 받아들였다.

Accounting Principles Board

1959年에 CAP는 APB의 構成으로 終熄되었는데 이는 AICPA가 特定한 會計問題에 關한 意見을 發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問題를 處理하는데 基本이 되는 會計原則의 發展에 重點을 두게 된 것을 뜻한다. 이를 爲하여 研究活動을 擴張하였다.

研究課題를 進行시키기 爲하여 會計研究部長下에 研究員들을 두었다. 研究課題가 始作되면 APB와의 交信을 원활하게 하기 爲하여 APB 委員中의 한사람을 委員長으로 하고 AICPA會員과 實業界等에서 資格있는 사람들을 擇하여 諮問委員會를 構成하였다. 完成된 研究物(Accounting Research Study)은 一般에게 情報과 資料를 提供하는 것으로 臨時的인 것이지만 어떤 權威있는 認定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들 研究物은 問題點을 調査하여 問題處理의 贊反을 比較하여 좋다고 생각되는 方法을 提案하는 것이었다. APB는 어떤 案을 澤

定하기 前에 이 研究物은 實業界, 金融界, 會計實務家들에게 配布하여 많은 사람들이 自己의 意見을 表示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였다. 이러한 方法에 依하여 APB는 一般的으로 公認된 會計原則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APB는 12개의 研究物을 發刊하였다.

一般的으로 公認된 會計原則에 關하여 AICPA의 立場을 說明하는 意見書 (Opinion)를 發表할 때는 반드시 APB委員 21名中 $\frac{2}{3}$ 以上の 同議를 얻어야 한다. 正常的인 경우에 있어서는 Opinion은 研究에 依據하여 抄案(Exposure Draft)이 作成되어 抄案이 學界와 實務界에서 充分한 討論을 거친 後에 決定 發表된다. 처음엔 CAP때와 같이 一般的으로 公認되어 適用되기를 바랬으나 1964년에 AICPA 理事會(Council of AICPA)에서 다음과 같은 點을 公表하였다. ① 一般的으로 公認된 會計原則은 相當히 權威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② APB의 Opinion은 權威있는 뒷받침을 받고 있다. ③ APB Opinion 以外の 會計原則도 權威있는 뒷받침이 있을 수 있으나 APB Opinion과 相異한 原則은 반드시 財務諸表의 脚註나 公認會計士의 報告書에 記載 明示하여야 한다

APB는 1973年 6月 30日에 일을 끝낼 때까지 31개의 Opinion을 發表하였다. 初期의 Opinion은 대부분이 CAP의 發表物을 改正하고 節次上의 問題를 많이 取扱하였다. 뒤늦게 原則的인 問題에 方向을 돌렸으나 變遷하는 時代가 要求하는 基本問題의 解決에 能率을 올리지 못해 APB의 운명은 끝나고 말았다.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會計實務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會計理論에 많은 貢獻을 한 組織이다. 主로 會計學教授들의 觀點을 報告 發表하는데 주기적으로 財務諸表 作成의 基本이 되는 會計基準에 關하여 發表한다. 最近의 것으로는 1966년에 發表한 會計理論의 基本書(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이다. AAA는 또 有名한 教授들의 研究를 도와 모노그라프를 發刊한다. 1940년에 페이튼(W.A. Paton)과 리틀톤(A.C. Littleton)이 낸 株式會社 會計基準序說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은 셋째 모노그라프로 아직도 會計理論의 發展에 큰 起點으로 되어 있다. AAA의 모노그라프나 會計基準에 關한 研究物은 다른 組織들과는 달리 演繹的인 方法을 쓰고 있다. 即 財務會計와 財務諸表가 무엇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에 關하여 一般理論을 展開한다. 特定한 會計問題의 解決에는 별로 注視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會計原則의 發展에 미친 AAA의 影響은 SEC나 APB보다 實質的이고 繼續的이었다.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1971년에 AICPA는 뒷받치는 APB의 非能率的인 活動의 非難때문에 Wheat 委員會를 만들어 會計原則의 制定에 있어서 좀 더 効率的인 方法을 찾기로 하

였다. 1972年 5월에 委員會의 報告書를 받아 AICPA의 理事會는 提言에 따라 FASB를 새로 만들고 APB를 終熄시키기로 決定하였다. FASB는 1973年 7月 1日부터 일을 始作하였는데 이의 構成은 AICPA의 理事會에서 9名の 理事를 選定하여 이들로 하여금 獨立된 機關인 FAF(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를 만들도록 하였다. 9名の 理事는 AICPA의 會長과 4名の 公認會計士 2名の 財務會計擔當重役(한 사람은 Financial Executive Institute, 다른 한명은 National Associate Accountants), 1名은 財務分析家(Financial Analyst Federation에서) 또 1名은 會計學會(AAA)에서 選定되도록 되어 있다. 9名の 理事는 40名の 諮問委員會와 7名の FASB委員을 選定하는데 委員中 4名은 公認會計士이고 3名은 學界와 實業界에서 選定하도록 되어 있고 任期는 5年이다. 이들 7名은 다른 職業을 가질 수 없고 全的으로 財務會計基準制定에만 全力을 다하게 되어 있다.

FASB가 當面한 가장 主要한 問題는 어떻게 法的으로 會計原則을 制定할 權限이 있는 SEC와 協助를 잘 하여 나가 많은 會計實務家들의 所望대로 會計原則을 政府機關인 SEC에서 制定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있다. 그러나 어떤 측에서는 SEC가 會計原則을 制定하는 것은 時間問題이므로 FASB도 APB같이 終熄을 告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理由는 會計實務家들은 會計處理의 理解關係때문에 公正하고 바른 原則을 制定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理解關係를 떠나 SEC가 制定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美國의 學界나 實業界에서 FASB를 잘 運營해 보려고 努力하고 있음은 事實이다.

FASB의 運營은 APB와 같이 研究에 基礎한 抄案을 만들어 公廳會等을 通하여 意見을 綜合하기로 되었는데 正常的인 경우에는 120日 정도의 期間을 表하여 한가지 案件을 處理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 7가지의 案件을 研究하기 始作하였는데, 이들은 ① 財務諸表에 關한 廣範圍한 基準(이는 AICPA의 Trueblood委員會가 研究하고 있는 “財務諸表의 目的(The objective of Fincial Statements)”)이 끝나면 이를 많이 參考하기로 되어 있다. ② 外貨 評價에 關한 會計處理, ③ 持株會社의 財務諸表報告, ④ 重要性의 原則에 關한 基準, ⑤ 賃貸借에 대한 會計處理, ⑥ 天災地變, 外國投資, 自家保險 등으로 發生하는 特殊損失의 會計處理, ⑦ 試驗研究費, 開業費 및 立地變更 등의 會計處理 等이다. 이들 7가지의 案件의 30가지 案件中에서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되어 채택된 것이라고 한다.

Cost Accounting Standard Board

CASB는 政府와 契約을 하는 請負作業의 原價計算에 統一性을 維持하기 爲하여 1970년에 General Accounting Office(監査院)에 두었는데 GAO의 Comptroller General이 議長이 된다. 앞으로 FASB와 協助하여 會計原則의 發展에 많은 貢獻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Ⅲ. 美國의 一般的으로 公認된 會計原則

前述한 마와 같이 美國의 財務會計原則은 實務를 通하여 發展되어 온 것이므로 體系의으로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AICPA는 1965年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7으로 Paul Grady로 하여금 “一般的으로 公認된 企業會計原則目錄(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을 내게 하였다. 이 目錄은 새롭고 좀 더 나은 會計原則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① 會計原則의 根據를 두어야만 할 基本公準이나 概念을 指摘 表示하고, ② 財務諸表報告에 있어서 會計實務家들이 따라야 할 原則을 상세히 檢討하고, ③ 이러한 原則들이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PB Opinions, SEC規案에 의하여 權威있는 認證을 받는지를 指摘하기 爲한 것이었다.

이 目錄은 會計의 다섯가지 目的과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32面의 原則을 包含하고 있다. 紙面關係로 原則을 略하고 目的만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1) 營業成果를 期間의으로 公正히 報告하기 爲하여 賣出, 其他收益, 賣出原價, 營業費 및 其他 損失을 計上하여야 한다.

(2) 株主의 投資資本과 利益剩餘金의 期間의 變化를 意味있게 計上 報告하여야 한다. 企業體의 財務諸表上의 資本金計定의 組織과 表示는 法規定을 따름과 同時에 重要한 資本關係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 株主와 債權者들이 企業에 投資하여 調達된 資產을 計上하여 負債와 株主의 持分을 考慮할 때 期初와 期末의 企業의 財政狀態가 어떻게 變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公正하게 表示하여야 한다. 그러나 貸借對照表로 企業資產의 現價나 清算時에 實現될 價値를 表示하지 않는다는 것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4) 모든 負債를 意味있게 整理 計上하여 資產과 株主의 持分을 같이 考慮할 때 期初와 期末의 企業의 財政狀態가 公正히 表示되도록 하여야 한다.

(5) 財務諸表는 一般的으로 公認된 監査基準에 包含되어 있는 報告基準과 附合되게 作成報告하여야 한다. 投資者에 對한 報告書는 企業實體의 理論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ARS No.7에 있는 目的 및 原則은 一般的으로 公認된 것들이나에 關하여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原則은 一般的인 指針이 되어야 하는데 SEC는 指針으로서는 좀 부족한 點이 있다 그러나 實務에서 行해지고 있는 것을 正確하게 一般化한 것임엔 틀림없다. 이들은 모두 SEC規定,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PB Opinions 등에서 要求되고 또 추천된 것들이다.

AICPA의 Accounting Trends and Technigues(600個의 大規模會社의 會計

處理調査에 관한 것으로 每年한다)에 보면 實際로 ARS No. 7의 原則들이 使用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ARS No. 7의 32個 原則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① 企業實體論(Accounting Entities), ② 發生主義會計(Accrual Accounting), ③ 保守主義原則(Conservatism), ④ 繼續性的 原則(Consistency), ⑤ 原價主義(Cost), ⑥ 繼續企業의 原則(Going Concern), ⑦ 公開性的 原則(Full Disclosure), ⑧ 費用收益對應의 原則(Matching Cost Against Revenue), ⑨ 重要性的 原則(Materiality), ⑩ 客觀性的 原則(Objectivity), ⑪ 實現主義原則(Realization), ⑫ 貨幣價值安定의 原則(Stable Measuring Unit), ⑬ 會計期間의 原則(Accounting Period).

IV. 示 唆 點

첫째로 美露이 겪고 있는 財務會計基準制定過程에서의 混頓點이 우리에게 示唆하여 주는 點은 原則 或은 基準을 會計政策이나 會計節次와 混頓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基準이란 行爲를 引導하는 指針으로서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그러므로 基準은(特定한 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자세한 指示가 아니고 廣範圍하고 一般的인 指針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混頓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財務會計의 基準이 必要하다면 筆者의 생각으로는 다음 세가지에 대한 基準이 세워지면 된다고 본다. 이들은 資産, 負債, 利益의 定義 및 制定이다. 이 세 가지의 概念은 相互關聯되어 있는 것이므로 同時에 發展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할 일은 이 基準에 입각하여 特定한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指針이 나와야 된다. ARA나 APB Opinion은 事實上 體系있는 基準이 못되고 여기저기에 特定한 會計節次나 政策等이 記錄되어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實查資産評價에 있어서 先入先出法, 後入先出法, 平均法 等 모든 것들이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節次로 使用되게 되어 있는데 아무곳에서도 어떠한 基準에 依하여 이들 중 어떤 方法을 써야만 當期的 利益을 正確하게 計算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理想的으로 생각하면 財務會計의 基準은 明確하여 會計實務者들이 同一한 狀況下에서는 거의 같은 會計處理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萬若 差異가 났다면 이 差異는 事實을 잘못 解釋한데서 오는 差異이지 다른 基準을 適用하였기 때문에 오는 差異에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을 成就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나 반드시 財務會計의 目的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示唆하여 주는 點은 우리가 企業會計原則을 制定하는 것이 아니라 財務會計原則을 制定한다는 것이다. 企業會計의 原則이 있다면 이는 財務會計 管理會計, 稅務會計 等 모든 會計等의 分野를 全部 滿足시켜 주는 原則이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한 것이라고 筆者는 생각한다. 會計는 會計報告書의 利用者가 意思決定을 잘 할 수 있도록 經濟的인 資料를 蒐集, 記錄, 分類, 整理, 報告, 分析하는 行爲이다. 그러므로 意思決定者의 目的에 따라 要求되는 情報는 다른 것이다. 意思決定者의 目的에 附屬하는 가장 客觀的이고 信憑性있고 適切한 情報資料를 提供하는 것이 會計의 公準 或은 原則이 될 것이다. 이것이 會計의 基本公準 或은 原則이 되고 各 分野別로 自己分野에 맞는 原則을 制定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改正하려고 하는 企業會計原則은 財務會計原則이 되어야 할 것이다. 美國과 같이 原價會計原則도 定할 수 있고 稅務會計原則은 이미 稅法이 原則을 대신할 수 있고 公企業의 會計原則을 公企業에 대한 國家政策에 따라 原則을 定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一般的으로 公認된 或은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會計原則이란 말을 使用하기 前에 一般的으로 認定될 수 있는 財務會計原則(Generally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s)을 探索해야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要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企業會計原則改正案은 前文에 쓰여있는 것처럼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바를 要約한 것이 아니고 認定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要約한 것이다. 理論적으로 볼 때 認定되기를 바라는 或은 認定될 수 있는 原則이 實務을 根據로 하여 산만하게 整理된 所謂 一般的으로 認定된 原則보다 나을 수가 있다. 問題는 좋은 原則을 내어 놓으려면 첫째로 ARS No. 7과 같은 研究調查가 우리나라에서도 先行되어야 한다. 會計實務을 發展시키는 첫 段階는 現在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確實히 알아야 할 것이다.

現實分析이 끝나면 ARS No.1과 No.3 같은 研究를 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適合한 原則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No. 1은 1961년에 Maurice Moonitz가 쓴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이고 No. 3은 Robert T. Sprouse와 M. Moonitz가 1962년에 쓴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이다. 이것들은 實務家들의 反對로 인하여 一般的으로 認定된 原則이 되지 못하였다. 가장 큰 理由는 이것들은 原價主義會計處理에서 時價主義會計處理로 原則을 바꿀 것을 提案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에서 失敗한 APB는 前述한 ARS No. 7을 하여 原則을 體系化하기 보다는 現在 使用되고 있는 것들의 目錄을 만든 것이었다.

그러므로 筆者는 우리도 이러한 誤謬를 범하지 않기 爲해 먼저 現實分析을 통해 目錄을 만들고 現實에서 認定될 수 있는 좋은 原則을 만들자는 것이다. 쓰기 始作한 美國에서도 意味를 알지 못하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이런 말은 쓰지 말고 一般的으로 認定될 수 있는 좋은 原則을 만들자는 것이다.

네째로 누가 그러면 이러한 財務會計原則을 制定하여야 하느냐는 問題이다. 筆者는 美國에서 새로 始作한 FASB 보다 좀 더 廣範圍한 機構에서 하면 우

리나라 實情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FASB에는 SEC 사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SEC와 어떻게 有機的인 關係를 維持할 것인지 分明하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이를 생각하여 財務部를 包含한 證券業界, 實業界, 公認會計士會, 學會 등이 모두 參與한 財務會計原則制定委員會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社會科學의 原則은 時間과 空間의 影響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原則도 與件의 變更에 따라 곧 變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財務會計原則制定委員會는 常設機關으로 항상 原則의 適用與否을 研究하고 세롭고 나온 것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로 提言하고 싶은 것은 會計實務을 擔當하고 있는 實務家 特別히 公認會計士會와 會計學의 教育을 擔當하고 있는 大學의 會計學教授들의 研究問題이다. 長期的인 觀點에서 이 두 구름은 서로 理論과 實際를 補完하여 나갈 수 있도록 制度的인 研究組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會計學을 理論的으로 研究하는 學會나 研究구름의 經營學會內에 或은 別度로라도 생겨 公認會計士會와 같이 韓國의 財務會計原則의 發展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Bibliography

-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 Statement of Basic Theory*, Evanston, Illinois: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66.
- _____, Committee on Accounting Theory Construction and Verification, "Report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Theory Construction and Verification," *The Accounting Review*, Vol.46 (Supplement, 1971) pp. 51~79.
- American 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counting Research and Terminology Bulletins*, Final Edition,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61.
- Accounting Principles Board, "Statement by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 New York: AICPA, April 13, 1962.
- _____, Accounting Principles Board,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70.
- Chambers, Raymond J., *Accounting, Evaluation and Economic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 Edwards, Edgar O. and Philip W. Bell,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1.
- Grady, Paul,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7,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s, 1965.
- Ijiri, Yuji, *The Foundation of Accounting Measurement, A Mathematical*,

- Economic and Behavioral Inqui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7.
- MacNeal, Kenneth, *Truth in Accounting*,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39.
- Moonitz, Maurice,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61.
- Standers, T.H., H.R. Hatfield, and V. Moore, *A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38.
- Sorter, George H., "An 'Events' Approach to Basic Accounting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44 : 1, January 1969, pp.12-19.
- Sprouse, Robert T., and Maurice Moonitz, *A Tentative Set of Boar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3,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62.
- Sterling, Robert R., "Elements of Pure Accounting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42 : 1, January 1967, pp.62-73.
- Vance, Lawrence L., Chairman, *Berkeley Symposium on the Foundations of Financial Accounting*,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67.

(Summary)

What Lessons Can Korea Learn From the GAAP in the U.S.A.

Ja Song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have been to search the lessons which Korea can learn from the direction in the formulation of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To aid in an understanding of this direction, I have discussed the evolutionary and voluntary nature of their development and have described some of the major forces such as SEC, AICPA, AAA, etc. that have contributed to their development.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re the basic frame of reference in financial accounting. They have gained the respect and confidence of financial statement users. This development, however, is not complete. It likely never will be. Many difficult and controversial problems remain.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ive points that Korea should consider in developing good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s based on the direction in the formulation of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 (1) Principles are broad, general statements which serve as guides for solving specific problems; they are not detailed instructions. Currently a comprehensive, consistent, and generally accepted body of accounting principles does not exist in the United States or Korea. A body of principles should consist of a few fundamental concepts. Principles are not procedures. They should be differentiated each other.
- (2) It is impossible to develop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set of principles which can be applied both financial accounting and management accounting. Accounting figures should always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particular problem that they are intended to help solve, rather, than in any abstract sense. Therefor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should not be regarded as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s.

- (3) The another semantic problem centers around the term "accepted." We have to search "generally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s," not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To achieve this goal,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in Korea like ARS No. 7 of AICPA should be searched not to discover new or better accounting principle but ① to present the basic concepts to which accounting principles are oriented, and ② to enumerate the principles or practices currently adhered to or employed by the accountant in fulfilling his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
- (4) Not like the United States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 (standard) committee or board should include at least one member from government. Since government must assure that the interested people have adequate information on which to base their decision.
- (5) Theory and practice can complement one another and provide a check-and-balance procedure in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The continual interaction between the two should emerge set of concepts which comprise what we want as generally 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s.

Therefore, there should be a good research organization which can coordinate the interaction between KICPA and accounting theoretician such as college professor. Especially theoretician should organize a accounting oriented research group within or outside of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